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703호

제주특별자치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 직 급	임용 인원	주요 업무
대변인 (메시지 작성 분야)	지방행정6급 (일반임기제)	1명	○ 도정 연설문, 특강, 영상 메시지 등 말씀자료 작성 ○ 도지사·부지사 언론 발표자료 작성 ○ 언론 대담, 인터뷰 및 강연 자료 작성 ○ 기타 도정 홍보 메시지 작성

2. 임용(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 평가 등을 거쳐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하며, 사업이 종료될 경우 근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음

3.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적용기준일: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응시연령: 18세 이상인 자(2008.12.31.이전 출생자)

○ 주소지・성별: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다른 법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

나. 응시자격요건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

임용예정 분 야	임용예정 직 급	자 격 요 건
메시지 작성 분야	지방행정6급 (일반임기제)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경력 >** ○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단체 등에서 연설문, 대담 자료, 인터뷰, 홍보자료 등 메시지 작성 관련 유사업무(언론보도, 기사작성 등) 근무경력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관련분야 실무경력과 관련하여 **퇴직 후 3년(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

※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과 근무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함(예시: 주 20시간 근무)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요건·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 분	기 간
원서접수	2026. 11. 20.(금) ~ 2026. 11. 24.(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 12. 4.(금)
면접시험	2026. 12. 11.(금)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2. 15.(화)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최종 확인**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시험정보란에 게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 및 개별통보

7.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결정

-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위: 천원)

구 분	근무기간	연봉한계액		비 고
		상한액	하한액	
6급(상당)	2년	86,606	57,708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1. 20.(금) ~ 2026. 11. 24.(화) (3일간, 근무시간 내)

나.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인재채용팀(제1청사 1층)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우편접수 :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

▷ 방문접수: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등기우편접수: 접수마감일(2026.11.24.) 18:00까지 우편 소인분에 한해 유효**

※ **응시자는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전화(064-710-6222)로 접수여부를 확인**해야 함

▷ 우편봉투 겉면에 **'2026 제주특별자치도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표기

▷ 우편으로 원서를 제출한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전까지 개별 회신 예정

9.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서식 1호)	목록별로 제출여부 표시	공통
2. 응시원서 1부 (별지 서식 2호)	(방문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구입(제주특별자치도청 민원실) (우편접수) 우체국 우편통상환 구입・동봉 - 5급이상(가급): 1만원, 6・7급: 7천원, 8・9급(라급): 5천원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공통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3호)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해당분야 경력사항만 기재 (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공통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서식 4호)	A4용지 2매 이내	공통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서식 5호)	A4용지 3매 이내	공통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별지 서식 6호)	응시분야 선택 후 해당 자격기준 선택 표시	공통
7. 동의서 각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별지 서식 7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서식 8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9호)	공통
8.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인 경우 학사 학위증명서 함께 제출 **※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	공통
9. 동일계통 학위(학과)증명서 (별지 서식 10호)	취득한 학위가 응시 자격의 관련분야 학위(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 제출 **※ 관련분야 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해당자
10. 경력(재직)증명서 1부 (별지 서식 11호)	▷ 담당업무, 근무기간(년, 월, 일)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만 인정되며, 현재 근무중인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기준(원본 제출)** -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문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공통

구 분	내 용	비고
1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기간 전체기간” 발급(원본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공통
12. 주민등록초본(병역 사항포함) 1부	별지 서식 8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인 경우 해당하며, 병역 사항 기재 포함	공통
13.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1부	사본 제출 가능(원본 제출한 경우 희망할 경우 확인 복사 후 반환)	해당자
14. 학위논문 요약서 (별지 서식 12호)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 요약서 제출 - 논문 표지 사본 첨부	해당자
15. 개별사항 (별지 서식 13호)	▷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유효기간 이내만 인정) ▷ 기타분야 자격증 사본 ▷ 관련분야 연구실적(논문, 저서 등) ▷ 수상, 상훈 등	해당자
※ 주의사항	**▷ 제출서류 편철 시 스테이플러, 클립 등 사용 금지**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해외학위, 해외경력 등)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 **▷ 최종합격자인 경우 사본으로 제출된 구비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원본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응시자는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거나 제출된 증빙자료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10. 기타사항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원서접수기간,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 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시험 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당초 원서접수기간 중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재공고에 따른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시행 7일전에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 별도 공고 합니다.

○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http://www.jeju.go.kr)의 시험/채용정보란에 게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절차 관련 문의: 총무과 인재채용팀 (☎ 064-710-6222)
- 직무내용 관련 문의: 대변인 (☎ 064-710-2043)